

대전지방법원 2021. 10. 27 선고 2021가단896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0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중구 C 대 20㎡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7. 12. 20. 접수 제191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강길연

별지